



(:)

[시행 2021. 1. 1] [해양수산부령 제451호, 2020. 12.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4, 5835

6 () 법 제2조제1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4., 2013. 5. 15.>

1. 발틱해역(보스니아만, 핀란드만 및 스카게락해협)의 스카우를 지나는 북위 57도 44.8분의 위도선을 경계선으로 하는 발틱해의 입구를 포함한 고유의 발틱해역
2. 다음 경계 내에 있는 북해해역
 - 가. 북위 62도의 남쪽과 서경 4도의 동쪽 사이
 - 나. 스카게락해협(남쪽 한계는 북위 57도 44.89분의 스카우에서 동쪽으로 그은 위도선)
 - 다. 영국해협과 서경 5도의 동쪽, 북위 48도 30분의 북쪽으로부터의 영국해협 사이
- 2의2. 별표 1의2에 따른 북아메리카 해역
- 2의3. 별표 1의3에 따른 캐리비안 해역
3. 국제해사기구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 해역

32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디젤기관”이란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디젤기관(교체·추가·개조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23.]

33 (가) 법 제4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34 (가)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0 제3호에 따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2020. 11. 19.>

②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이란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ppm)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부피백분율) 배출량의 비율이 4.3[4.3 SO₂(ppm)/CO₂(%, v/v)]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3., 2013. 3. 24., 2019. 2. 13., 2020. 11. 19.>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이하 “부적합 연료유”라 한다)의 사용을 인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으려는 항만에 입항하기 3일 전까지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24.>

④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9., 2020. 12. 24.>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날짜·시간 및 장소
 - 나. 연료유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양
 - 다. 연료유의 황함유량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날짜·시간·장소 및 고장 사항
 - 나. 가목에 따른 고장 사항의 수리·대체 등 조치 내용

3. 법 제44조제3항제3호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짜·장소·수급량 및 해당 연료유의 항함유량

39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선체 및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2020. 11. 19.>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 외의 선박은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에 한정한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명세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및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해당되는 선박에 한정한다)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평형수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아. 화물을 적재할 때의 복원성 및 선박이 손상될 때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질소산화물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부품의 설정방법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기록을 말하며, 그 시험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이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라 한다)의 기술 매뉴얼(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증명서, 형식 및 운전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유지보수 이력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카.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안내표시판(안내표시판 부착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및 폐기물관리계획서(해당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협약검사증서

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해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 전에 새로운 증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검사 후 장기간 항해, 조업 등의 사유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해당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에 갖추어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7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46 ()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디젤기관(이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이라 한다)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명세서

나.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구조 도면

다. 표본기관(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표본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이 적용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범위 및 선정 기준

라.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명세서

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구조 도면

다.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배기가스의 황산화물 배출수치 감지기의 설치 위치, 보수 및 보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라. 황산화물 배출 적합 계획서(연료유 연소장치의 목록과 배출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장치가 운전됨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록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설비가 별표 20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2019. 2. 13.>

④ 법 제5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 예비검사와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5. 1. 8.>

⑥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검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1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승인

나. 별표 20 제3호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⑦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검사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사항의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15., 2015. 1. 8., 2019. 2. 13.>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질소산화물배출 관련 기록부 및 검사증서

2.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경우: 외국정부가 승인 및 발급한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63 3()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 제39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추록,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 검사증서, 제44조제4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같은 항 제2호에

다른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본조신설 2020. 11. 19.]

<제419호, 2011. 12. 23.>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1의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1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130kW[176PS] 초과 출력 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과 2006년 6월 29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제작된 출력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은 제외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카목 및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차목에 따라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예비검사를 받은 디젤기관
 2.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디젤기관으로서 제1호 외의 디젤기관
- 3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디젤기관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기술코드(NOx Technical Code 2008)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51호, 2020. 12. 24.>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발급된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는 각각 제3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3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로 본다.
- 3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 부속서 6에 따라 제출된 부적합 연료유 사용보고서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로 본다.